

심사보고서
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
출자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5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다양한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자 목적
 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○ 출자 근거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
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 대상자)

○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 출자

- 출자개요 -

- 사 업 명 :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
- 운 용 사 :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대표 나종윤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30년(8년) ※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250억원
한국모태펀드^{국비} 137.5, 충청북도 20, 신영증권 10, 인천시 10, 화성시 18,
(주)SRDF^{이자전지전문회사} 32.5,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^{운용사} 22
- 출자금액 : 2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/ 4년간)
- 투자대상 : 초기창업기업 60%이상, 비 수도권 지역에 20%이상
-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, 이 중 30억 이상
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 투자

○ 기대 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지역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생태계를 개선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충북 창업 활성화 및 생존율 제고
 - (도내 창업기업 현황) ‘21년 충북의 창업기업(법인+개인)은 39,195개로 전국의 2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7개 시·도중 11위에 해당
 - (기업생존율) ‘19년 기준(‘21년 발표) 충북지역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.3%이나 5년 생존율은 29.1%, 7년 생존율은 21.0%
 - (위기 극복 선제 조치) 신규 투자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데스밸리 극복 도움
- 지역 내 혁신 창업 기반 마련 : 혁신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뿐아니라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과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제적 기반 구축
- 공공과 민간 투자의 상생 : 공공분야의 선제적 창업 펀드 조성으로 지역 내 투자 활성화의 기초를 구축 → 도내 민간 투자사 활동 유입기반 마련 → 선순환 투자 생태계 모델 구현

나. 제출경위

-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(모태펀드) 최종선정 : ‘22. 6.
-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검 : ‘22. 9.
- 2022년도 제4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: ‘22. 10.
-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제출 : ‘22. 10.

다. 종합의견

- 본 ‘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계획안’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을 위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
- ‘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’는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분야 지원을 위해 출자·조성하는 펀드로,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55%를 차지하는 정부 정책 주도 펀드임
- 이 펀드는 수도권-비수도권 간의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 20% 이상 투자를 필수조건으로 하고, 모험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투자가 주목적인 펀드로 초기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
- 또한 농식품 분야 전문투자인력을 보유하여 스마트농업 분야에 30억 이상 투자예정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주)가 신생 벤처투자조합이긴 하나 ① 90억 원이 넘는 자기자본 보유, ② 8:1 경쟁률의 중기부 모태펀드(국비) 선정으로 한국벤처투자의 검증통과, ③도내 기업에 도 출자액의 3배 이상 투자, ④도내 투자금의 50% 이상 농업 분야 투자 필수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출자는 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

- 또한 본 출자 계획안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1호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1항1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법률 및 절차적 근거를 충족함
- 최근 글로벌 긴축, 3高(금리·환율·물가) 등 경제 여건 급변으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, 앞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벤처·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투자 지원책이 절실하므로 출자계획안을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붙임자료

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 혁신창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우경수	김왕일	송은정	220-3342

조 합 명	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				
출자대상	<p>○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대표 나종윤) 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, 충청북도, 신영증권, 인천시, 화성시, (주)SRDF - 존속기간 : 2022년 ~ 2030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 : 250억원 <p>※ 한국모태펀드 137.5, 충청북도 20, 신영증권 10, 인천시 10, 화성시 18, (주)SRDF 32.5, 운용사 2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대상 : 초기창업기업 60%이상, 비수도권 지역 20%이상 - 道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 이중 30억 이상은 스마트 농업 등 농업분야 투자 					
출 자 사 업 비	○ 출자 예정금액 : 2,000백만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2,000)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백만원)					
	구 분	출자기간	계	2022년	2023년	2024년
펀드 출자	2022 ~ 2025 (4년간)	2,000	1,000	200	600	200
출 자 필 요 성	<p>○ 혁신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및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, 육성 및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</p> <p>○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활성화의 기초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</p>					
근거법령	<p>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</p> <p>④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</p> <p>1. 벤처투자조합</p>					
지도감독 부서이견 (중 평)	<p>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일정비율 비수도권 출자를 추진하는 펀드로서 충청도에서 일정액을 출자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</p> <p>○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창업모델 구축 및 일자리 증대효과</p>					
첨부자료	<p>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</p> <p>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</p>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해당없음

2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모험자금 및 기존 벤처펀드를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자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시드머니 지원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
-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
-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3 출자금 검토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전체규모	2022년 출자액	2023년 출자액	2024년 출자액	2025년 출자액	출자 비율
합 계		250	58.4	69	73	49.6	100%
LP (출자자)	한국모태펀드	137.5	27.5	40	40	30	55%
	충청북도	20	10	2	6	2	8%
	신영증권	10	2	3	3	2	4%
	인천광역시	10	2	3	3	2	4%
	화성시	18	6	6	6	-	7.2%
	(주)SRDF	32.5	6.5	9	9	8	13%
GP (운용사)	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	22	4.4	6	6	5.6	8.8%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※ 운용사 22억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이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의무

근거법령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업명	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구분	출자	2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도에서 마중물 투자를 실시하여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기반 마련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출자개요

- 사업명 : 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
- 운 용 사 :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(대표 나종윤)
- 존속기간 : 2022년 ~ 2030년(8년) ※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250억원
 - 한국모태펀드^{국비} 137.5, 충청북도 20, 신영증권 10, 인천시 10, 화성시 18, (주)SRDF^{이차전지전문회사} 32.5,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^{운용사} 22
- 道 출자금액 : 2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/ 4년간)
- 투자대상 : 초기창업기업 60%이상, 비 수도권 지역에 20%이상
- 道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3배(60억)이상 투자
이중 30억 이상은 스마트 농업 등 농업분야 투자

□ 산출기초

- 펀드 총 출자약정 내역 : 250억원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모태펀드(국비)	도비	기타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25,000	13,750	2,000	9,250

- 도 출자계획 : 20억원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출자기간	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타임웍스 원더스 스타트업 벤처펀드	'22~'25	2,000	1,000	200	600	200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□ 기대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지역 출자를 추진하는 펀드로 충북도에서 함께 출자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출자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비수도권 투자활성화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모태펀드^{국비}에 도가 출자 약정한 사업으로 미 승인 시 향후 충북도의 펀드 참여 어려움 발생
-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이 펀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소멸 우려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※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벤처기업법) 제4조제5항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벤처투자법) 제정('20.2.11.)으로 벤처투자법 제71조로 이관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